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29
----------	-------

제출년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보완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안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지자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안 제2조)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및 징수방법 규정(안 제3조)
-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 게재시 비용 산정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 위원회 명칭을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개선(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타인의 토지·건물 등에 출입시 출입증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개정조례안 : 붙임1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3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1. 4. 1. ~ 2021. 4. 21.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4
- 방침결정문 : 붙임5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안산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안산시 수입 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안산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

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및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체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산시 주소정보 위원회로 본다.

소관 실·과		토지정보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토지정보과장 박 용 남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로명주소팀장 이 상 배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경 임 (행정 2638)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안 산 시

60mm×90mm [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안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629
----------	-------

제안년월일 : 2021년 6월 18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수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조문이 변경되어 표준조례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간 불부합 사항을 수정함.

주요골자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서 상위 법령 인용 사항을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으로 수정.(안 제3조제1항)
- 업무 위탁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문 각 호를 “영 제40조제2항”,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영 제53조”로 각각 수정.(안 제16조제1항제7호~10호)
- 토지 등의 출입증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 삭제.(안 제17조, 별지 1호~2호 서식)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한다.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를 삭제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③ (생략)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p>계 호</p> <p>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사 권</p> <p style="text-align: center;">3cm×4cm</p> <p style="text-align: center;">(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산 시</p>

50mm×90mm (백상지 150g/㎡)
(역장·연하용액)

(뒤 쪽)

<p>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p> <p>소속(취급)직위): 성 명: 영년월일: 유효기간: ... 부터 ... 까지</p> <p>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안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산 시 장 직인</p> <p style="font-size: x-small;">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p>
--

사항

10. 영 제53조-----

<삭 제>

②·③ (원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